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11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

I.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11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3.

(3) 회 부 일 : 2025. 2.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해당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타인 소유 주식·출자지분 매입 취득제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조합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 조합의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계산 -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적용기한 연장</u> - <u>2028년 12월 31일(천하람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u> - <u>2030년 12월 31일(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u>

* 이인선의원안 2025. 2. 13. 발의(의안번호 제8117호),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제9294호), 천하람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제11544호), 추경호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제12052호),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제12653호)

□ 5건의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예정인 창업기업 등에
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천하람의원안, 추
경호의원안, 정부안), 5년(이인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① 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②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지급 시 조
합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부과, ③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 지급
시 조합의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부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
고 있고,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구체적으로는, ① 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에 대하여는, (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벤처기
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에 출자함으
로써 취득한 주식등,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¹⁾하여 벤
처기업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라) K-OTC²⁾에서 거
래되는 벤처기업 주식,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출
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식등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1) 창업 5년 이내 및 벤처기업 전환 3년 이내에 한정하며,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의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자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이어야 함).

2) K-OTC(Korea Over-The-Counter)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을 의미

② 조합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는, (가)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다)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마)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바)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합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③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합이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의 2024년 감면 실적은 53억원이고, 2025년과 2026년은 각각 60억원, 66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감면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 (전망)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3	53	60	66

자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음.

첫째, 동 조세특례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후 그 주식등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기대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

특히, 개정안은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위축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려는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음.

둘째, 벤처기업 중 51.0%가 신규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있다³⁾는 점에서 세제지원을 통해서 민간벤처투자를 유인할 정책적 필요성·타당성이 있고,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동 과세특례가 개인의 벤처투자 유도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동 과세특

3)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12월 말 기준 벤처기업 36,959개를 대상으로 2024년 실시한 「2024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중 51.0%가 신규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조달 규모는 1,720만원 수준임. 신규자금은 주로 민간금융 기관대출(28.8%), 정책금융 기관지원(24.1%)을 통해 조달함.(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p.51·53)

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⁴⁾된 바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각각 3년과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지난 2022년 정기회에서는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4)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창업자 등예외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0. p. 167~169.